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및 변경지정 고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따라 2026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및 변경지정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2일
교육부장관 최교진

1.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및 변경지정 개요

신규지정

지역	특례 주요내용	적용대상	적용기간
강원 (2건)	■ 비전임교원의 공개채용 예외 및 정년 기준(65세) 완화	강원대, 한림대(공개채용만 해당)	'26.06.12 ~ '30.06.11.
	■ 표준 현장실습지원비 국고·지방비 지원을 한도 상향 (25%→50%)	강원대, 한림대	

변경지정

지역	특례 주요내용	적용대상	적용기간
부산 (3건)	■ 표준 현장실습지원비 지원을 한도 상향 (25%→50%)	경성대 동명대, 부산대	'26.06.12 ~ '30.06.11.
	■ 교지·교사 임차 제한(동일 지자체(시·군·구)) 완화	경성대	
	■ 비전임교원의 공개채용 예외	부산대	
광주·전남 (2건)	■ 비전임교원의 공개채용 예외 및 정년 기준(65세) 완화	전남대	'25.4.21. ~ '29.04.20.
	■ 국립대학 부총장 임용 자격 완화 (외부 전문가 채용)		
대구·경북 (4건)	■ 비전임교원 정년기준 완화	경북대, 국립경국대	'26.06.12 ~ '30.06.11.
	■ 교지·교사 임차 제한(동일 지자체(시·군·구)) 완화	경북대, 영남이공대, 대구한의대	'25.06.09 ~ '29.06.08.
	■ 표준 현장실습지원비 지원을 한도 상향 (25%→50%)	경북대, 계명대, 영남이공대, 계명문화대, 영진전문대, 대구공업대, 대구보건대, 수성대, 대구과학대	
	■ 강사 주당 강의시간 제한 완화 (6시간/9시간→9시간/12시간)	국립경국대	'26.06.12 ~ '30.06.11.
대전·세종·충남 (5건)	■ 대학 주요 보직(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에 외부인사의 임명 허용	충남대, 국립공주대	'26.06.12 ~ '30.06.11.
	■ 비전임교원의 공개채용 예외 및 정년 기준(65세) 완화	충남대, 국립공주대	
	■ 표준 현장실습지원비 지원을 한도 상향 (25%→50%)	충남대, 국립공주대	'23.03.01. ~ '27.02.28.
	■ 대학-전문대학(전공심화과정) 간 교육과정 공동 운영 시 공동학위 수여 허용	충남대, 국립공주대	'26.06.12 ~ '30.06.11.
	■ 교지·교사 임차 제한(임차권 설정 필요) 규제 완화	순천향대	'25.04.21. ~ '29.04.20.

※ (신규지정) 특화지역으로 지정되어 규제특례 내용을 새롭게 적용
(변경지정) 기존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규제특례 내용 등을 추가·변경

2.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및 변경 지정

① 강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지정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통합 강원대학교(‘26.3.강원대-강릉원주대 통합)’ 및 한림대학교(글로벌대학)의 지역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실무·현장 중심 교육 강화, 외부 전문인력 활용 확대 등 고등교육 운영 전반의 구조적 혁신이 요구되고 있음
- 통합 강원대학교의 다캠퍼스 체제 전환과 한림대학교의 교육혁신 추진 과정에서 교원 확보, 현장실습 운영 기준 등 기존 제도의 경직성은 대학혁신 추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규제특례 도입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교육혁신 여건을 확보하고, 교육-산업-지역사회 간 연계가 강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강원권 고등교육 혁신과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됨

□ 규제특례 적용범위, 기간 및 고등교육기관

규제특례 내용	적용대상 (고등교육기관)	적용기간
① 비전임교원의 공개채용 예외 및 정년(만65세) 예외 허용 (규제) 「고등교육법」 제17조, 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11 ① (조건부수용) 산업체·연구원·국내외석학 등 우수 인재의 원활한 비전임교원 채용을 위해 공개채용 원칙을 부분적으로 완화 <준수 조건> ▶ 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학칙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검증을 포함한 심사절차 및 규정 등을 정비 ▶ 학칙 또는 정관으로 비전임교원의 공개채용 예외 적용 요건 및 적용 대상(출연연 연구원 및 일정 산업체 경력, 국내·외 전임교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 ▶ 필요시, 세부 운영 사항은 교육부 소관부서와 수시 협의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공개채용만 해당)	‘26.06.12 ~ ‘30.06.11.

규제특례 내용	적용대상 (고등교육기관)	적용기간
② (조건부수용) 산업체의 시니어 전문 인력을 비전임교원으로 채용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며, 다음의 조건 준수 필요 <준수 조건> ▶ 학칙으로 비전임교원의 정년 예외 적용 대상(출연연 연구원 및 일정 산업체 경력, 국내·외 전임교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② 표준 현장실습지원비 국·지방비 지원을 한도 상향 (규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고시) 제30조제5항제3호 강원대 (일부수용) 신청자인 1)강원대에 한하여 2)공공기관·출연연 또는 정부·지자체 지정·관리 산업체 대상 표준 현장실습지원비 지원을 한도 상향(25% → 50%) 특례 부여 한림대 (일부수용) 공공기관·출연연 또는 정부·지자체 지정·관리 산업체 대상 표준 현장실습지원비 지원을 한도 상향(25% → 50%) 특례 부여 <규제특례 적용 대상> ▶ 규제특례 적용 대상 실습기관은 '공공기관·출연연 또는 정부·지자체 지정·관리 산업체'로 한정함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② 부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 지정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부산 지역 청년 인구 감소와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산업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인재혁신 생태계 구축이 필요
- 외부의 우수 전문가 채용 절차의 간소화로 현장 전문가를 적시에 초빙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실습 운영 기준 완화로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 현장 실전형 인재를 양성하여 대학의 경쟁력 강화 기대

□ 규제특례 적용범위, 기간 및 고등교육기관

규제특례 내용	적용대상 (고등교육기관)	적용기간
① 표준현장실습학기제 규제 완화 (규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고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①\$30⑤3호 실습비 지원율(25%), ②\$5②1호 직무교육시간 비율(10%~25%) ① (일부수용) 현장실습지원비 지원을 한도 상향으로 실습기관의 실습비 부담 완화를 통한 양질의 실습처 발굴 및 현장실습학기제 내실화 가능 - 다만, 대학의 규제특례 적용여부에 따라 실습기관에 대한 표준 현장실습비 환급액 편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실습생 간 실습기회 획득 형평성 보장을 위해 타 지역에 준한 지원을 상향 대상 실습기관 범위 설정 필요 ○ 따라서, '공공기관·출연연 또는 정부·지자체 지정·관리 산업체' 대상 표준 현장실습지원비 지원을 한도 상향 수용(25% → 50%) ② (불수용) 합리적 현장실습환경 보장이라는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취지 및 실습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성 부여 필요성 고려 시, - 직무교육시간 비율증가는 '직무실습시간' 비율 감소로 이어져 실습기관의 의무 실습지원비를 감소시킬 수 있어 부적절 제22조(실습지원비) ③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실습지원비 산출 기준이 되는 단위 실습시간 수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일 실습시간 수 × 주 실습일수 + 1주 1일의 유급 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 2. 월 단위 실습시간 수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7) × (365 ÷ 12)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3.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1 -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의 소수점 둘째자리 값(셋째자리 올림 값) ④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실습지원비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 단위 실습지원비 :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주 단위 실습시간 수, <u>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u> 2. 월 단위 실습지원비 :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월 단위 실습시간 수,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	경성대학교 동명대학교 부산대학교	'26.06.12. ~ '30.06.11.
② 교자·교사 임차 활용 범위 확대 (규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9조 제1항 2호 가목, 나목 (조건부수용) 글로벌 대학인 경성대의 'K-컬처 우수 기업 현장과의 연계 교육 및 실무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해당 대학 소재지 동일 광역지자체(부산광역시)에 한하여 건축물 또는 토지를 임차하여 교자 또는 교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	경성대학교	

규제특례 내용	적용대상 (고등교육기관)	적용기간
<공통 준수 조건> ▶ 해당 시설의 활용이 일시적·보조적 수준이 아닌, 정규 교육과정에 따른 이론 수업이 상시로 이루어 질 경우 그 위치가 단일교지 인정요건(20km 이내 또는 동일 시군구)에 부합하지 않는 한 "위치변경 인가" 절차 진행 <특례운영시 고려사항> ▶ 1)교지는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확보, 2)교사는 건축 관계법령에 적합해야 하며, 3)교수·학습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의 내부 환경은 「학교보건법」제4조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해야 함 ▶ 건축물 또는 토지에 지상권, 전세권 또는 등기되는 임차권을 설정(전세권 또는 임차권은 5년 이상 계속해서 유지)하여 교육 및 연구활동의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함		
④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예외 적용 (규제) 「고등교육법」제17조, 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11 ① (조건부수용) 산업·공공 현장 전문가 등 우수 인재의 원활한 비전임교원 채용을 위해 공개채용 원칙을 부분적으로 완화할 필요성에 공감함 <준수 조건> ▶ 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학칙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검증 등을 포함한 심사절차 및 규정 등을 정비 ▶ 학칙으로 비전임교원의 공개채용 예외 적용 요건 및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 *[규제특례 신청 내용]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내 운영되는 AI 등 첨단 산업 연계 교육과정 및 사업 운영을 위해 비전임교원 채용이 필요한 경우로, 관련 분야의 교육·기간·대상이 명확히 규정되어 자체 심의 결과 교육과정의 적합성이 검증된 경우로 규정 ▶ 필요시, 세부 운영 사항은 교육부 소관부서와 수시 협의	부산대학교	

③ 광주·전남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 지정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광주·전남 통합을 계기로 초광역 단위의 산학연 연계망을 구축하여, 파편화된 지역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자체와 대학이

연계한 동반성장 시너지 창출 필요

- 대학 운영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외부 산업계 전문가를 대학 거버넌스(주요 보직)에 적극 참여시켜 대학혁신 동력 확보 기대

□ 규제특례 적용범위, 기간 및 고등교육기관

규제특례 내용	적용대상 (고등교육기관)	적용기간
① 비전임교원의 공개채용 예외 및 정년(만65세) 예외 허용 (규제) : 「고등교육법」제17조, 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11 ① (조건부수용) 산업체·연구원·국내외 석학 등 우수 인재의 원활한 비전임교원 채용을 위해 공개채용 원칙을 부분적으로 완화할 필요성에 공감, 다만 이하의 조건 준수 필요 <준수 조건> ▶ 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학칙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검증을 포함한 심사절차 및 규정 등을 정비 ▶ 학칙 또는 정관으로 비전임교원의 공개채용 예외 적용 요건 및 적용 대상(출연연 연구원 및 일정 산업체 경력, 국내외 전임교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 ▶ 필요시, 세부 운영 사항은 교육부 소관부서와 수시 협의 ② (조건부수용) 시니어 전문 인력을 비전임교원으로 채용하여 첨단기술·융복합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함 - 다만, 신청 취지를 고려하고 무분별한 예외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학칙으로 비전임교원의 정년 예외 적용 대상 및 요건(일정 이상의 교육·연구 실적, 대학 인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필요 <준수 조건> ▶ 학칙으로 비전임교원의 정년 예외 적용 대상(출연연 연구원 및 일정 산업체 경력, 국내외 전임교원 등) 및 요건(일정 이상의 교육·연구 실적, 대학인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등) 구체적으로 규정	전남대학교	'25.4.21. ~ '29.4.20.
② 국립대학 부총장 임용 자격 완화(외부 인사 임용 허용) (규제) 「교육공무원법」 제27조, 「국립학교설치령」 제5조의2 (수용) 부총장 임용 자격 완화를 통해 경험과 역량을 갖춘 외부인사를 부총장으로 임용하여 대학 혁신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 - 신청 내용과 같이 「국립대학 부총장 임용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자의 직무 수행 역량 등을 검증하여 대학 구성원의 수용성 제고 필요		

④ 대구·경북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지정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대구·경북은 철강, 반도체, 자동차부품 등 국가 핵심 제조업과 로봇, 미래모빌리티, 인공지능,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빠른 성장으로 전문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청년 인재의 수도권 유출로 인력수급 불균형 발생
- 교지·교사의 임차 활용 범위 확대를 통해 지역 산업 수요 기반의 고등교육혁신을 지원하고, 비전임교원의 정년 예외 적용, 강사의 주당 강의 시간 확대를 통해 대학의 혁신성 강화

□ 규제특례 적용범위, 기간 및 고등교육기관

규제특례 내용	적용대상 (고등교육기관)	적용기간
① 비전임교원의 정년(만65세) 예외 허용 (규제) 「고등교육법」제17조, 제14조의2 (조건부수용) 시니어 전문 인력을 비전임교원으로 채용하여 첨단기술·융복합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함 - 다만, 무분별한 예외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학칙으로 비전임교원의 정년 예외 적용 대상 및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 필요 <준수 조건> ▶ 학칙으로 비전임교원의 정년 예외 적용 대상(출연연 연구원 및 일정 산업체 경력, 국내외 전임교원 등) 및 요건(일정 이상의 교육·연구 실적, 대학인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등) 구체적으로 규정	경북대학교 국립경북대학교	'26.06.12 ~ '30.06.11.
② 교지·교사 임차 활용 범위 확대 (규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9조 제1항 2호 가목, 나목 ① (경북대) 교지·교사를 임차해 활용하는 경우, 동일 광역지자체(대구광역시)까지로 확대 요청, 임차한 건물의 리모델링 등 자산가치 상승과 관련된 항목 집행 허가 요청 (일부수용) 글로벌 대학인 경북대의 Micro 캠퍼스의 조성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대학 소재지 동일 광역지자체(대구광역시)에 한하여 건축물 또는 토지를 임차하여 교지 또는 교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 - 다만, 임차한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등 자산가치 상승과 관련된 항목은 타인 소유의 부동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발생시켜 재원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하므로 수용 곤란 ※ 「국립대학회계법」 제26조(재산관리) ①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취득한 시설, 토지 및 물품은 국유재산으로 본다.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25.6.9 ~ '29.6.8..

규제특례 내용	적용대상 (고등교육기관)	적용기간
② (영남이공대) 산업체 인근지역(동일 생활권인 경북지역 내)까지 임차한 토지 및 건축물을 교지·교사로 인정 요청 (일부수용) 해당 대학 소재지 동일 광역지자체(대구광역시)에 한하여 건축물 또는 토지를 임차하여 교지 또는 교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 ※ 광역지자체를 벗어나는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은 교지의 일체성 및 관리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수용 곤란 ③ (대구한의대) 기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고시 제2025-217호)된 교지 외 추가 지정* 요청 * 영덕캠퍼스 : 로하스수산식품지원센터→ (추가) 영덕세대통합지원센터 청도캠퍼스 : 청도평생학습행복관→ (추가) 청도상상마루 (조건부수용) 글로벌 대학인 대구한의대의 '노마드(로컬)캠퍼스'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기 지정된 시설 외 영덕캠퍼스(영덕세대통합지원센터), 청도캠퍼스(청도상상마루)를 추가 * (경산캠) 바이오+헬스, (영덕캠) 기능성 소재+웰니스(청도캠) 기능성 식품+치유 < 공통 > < 준수 조건 > ▶ 해당 시설의 활용이 일시적·보조적 수준이 아닌, 정규 교육과정에 따른 이론 수업이 상시로 이루어 질 경우 그 위치가 단일교지 인정요건(20km이내 또는 동일 시군구)에 부합하지 않는 한 "위치변경 인가" 절차 진행 < 특례운영시 고려사항 > ▶ 1)교지는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확보, 2)교사는 건축 관계 법령에 적합해야 하며, 3)교수·학습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의 내부 환경은 「학교보건법」제4조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해야 함 ▶ 건축물 또는 토지에 지상권, 전세권 또는 등기되는 임차권을 설정(전세권 또는 임차권은 5년 이상 계속해서 유지)하여 교육 및 연구활동의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함		
③ 표준현장실습 실습지원비 지원비를 확대 (규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고시) 제30조제5항제3호 (일부수용) 현장실습지원비 지원을 한도 상향으로 실습기관의 실습비 부담 완화를 통한 양질의 실습처 발굴 및 현장실습학기제 내실화 가능 - 다만, 대학의 규제특례 적용여부에 따라 실습기관에 대한 표준 현장실습비 환급액 편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실습생 간 실습기회 획득 형평성 보장을 위해 타 지역에 준한 지원을 상향 대상 실습기관 범위 설정 필요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수성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25.6.9. ~ '29.6.8.

규제특례 내용	적용대상 (고등교육기관)	적용기간
○ 따라서, '공공기관·출연연 또는 정부·지자체 지정·관리 산업체' 대상 표준 현장실습지원비 지원을 한도 상향 수용(25% → 50%) < 규제특례 적용 대상 > ▶ 규제특례 적용 대상 실습기관은 '공공기관·출연연 또는 정부·지자체 지정·관리 산업체'로 한정함		
④ 강사 주당 강의시간 제한 완화 (규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수용) 강사의 강의시간을 주당 6시간으로 제한한 취지는 다수의 강사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대학이 전임교원에 비해 강의료가 저렴한 강사를 과도하게 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 다만, 현재 지역 내 대학 수가 적어 강사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고,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수요자가 요구하는 교육 과정을 적시에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 강사의 강의시간을 매주 9시간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규정하도록 규제특례 부여 ※ 특례운영시 고려사항 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교육과정이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강사 배정 시 과목의 필요성, 강사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	국립경국대학교	'26.06.12 ~ '30.06.11.

5 대전·세종·충남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지정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대전·세종·충남 초광역 경제생활권 지역인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상황에서 서비스업 중심인 대전,세종과 제조업 중심의 충남의 지역적 특성에 맞춘 대학 중심의 혁신생태계 구축 필요
- ※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생산가능인구 구성비율은 2024년 69.9% (286만명)에서 2050년 52.3%(210만명)로 감소 전망
- DSC 공유대학을 활용하여 전문대-일반대의 협력 강화, 주요 보

직에 외부인사를 임명하여 대학 조직의 개방성 확대 등 대학의 혁신을 통해 '지산학 동반성장'의 롤모델 구축

□ 규제특례 적용범위, 기간 및 고등교육기관

규제특례 내용	적용대상 (고등교육기관)	적용기간
❶ 대학 주요 보직에 외부인사의 임명 (규제) : 「교육공무원법」 제27조, 「국립학교설치령」 제5조의2 (수용) 주요 보직(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임용 자격 완화 를 통해 경험과 역량을 갖춘 외부인사를 임용 하여 대학 혁신 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 - 신청 내용과 같이 대학 자체 인사위원회 심사 를 통한 개방형 공개모집 및 성과계약 체결 을 통한 채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필요	충남대학교, 국립공주대학교	'26.06.12 ~ '30.06.11.
❷ 비전임교원의 공개채용 예외 및 정년(만65세) 예외 허용 (규제) 「고등교육법」 제17조, 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11 ① (조건부수용) 산업체·연구원·국내외석학 등 우수 인재의 원활한 비전임 교원 채용 을 위해 공개채용 원칙 을 부분적으로 완화 할 필요성에 공감, 다만 이하의 조건 준수 필요 <준수 조건> ▶ 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학칙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상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검증을 포함한 심사절차 및 규정 정비 ▶ 학칙으로 비전임교원의 공개채용 예외 적용 요건 및 적용 대상(출연 연구원 및 일정 산업체 경력, 국내·외 전임교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 ▶ 필요시, 세부 운영 사항은 교육부 소관부서와 수시 협의 ② (조건부수용) 산업체의 시니어 전문 인력을 비전임교원으로 채용 하여 전문인력을 양성 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며, 다음의 조건 준수 필요 <준수 조건> ▶ 학칙으로 비전임교원의 정년 예외 적용 대상(출연 연구원 및 일정 산업체 경력, 국내·외 전임교원 등) 및 요건(일정 이상의 교육·연구 실적, 대학인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등) 구체적으로 규정		
❸ 표준 현장실습지원비 국고·지방비 지원을 한도 상향 (규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고시) 제30조제5항제3호 (일부수용) 현장실습지원비 지원을 한도 상향 으로 실습기관의 실습지원비		

규제특례 내용	적용대상 (고등교육기관)	적용기간																												
부담 완화를 통한 양질의 실습처 발굴 및 현장실습학기제 내실화 가능 - 다만, 대학의 규제특례 적용여부에 따라 실습기관에 대한 표준 현장실습지원비 환급액 편차 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 실습생 간 실습기회 획득 형평성 보장 을 위해 타 지역에 준한 지원을 상향 대상 실습기관 범위 설정 필요 - 따라서, '공공기관·출연연 또는 정부·지자체 지정·관리 산업체' 대상 표준 현장실습지원비 지원을 한도 상향 수용(25% → 50%) <규제특례 적용 대상> ▶ 규제특례 적용 대상 실습기관은 '공공기관·출연연 또는 정부·지자체 지정·관리 산업체'로 한정함	충남대학교, 국립공주대학교	'26.06.12 ~ '30.06.11.																												
❹ 대학·전문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시 공동학위 수여 허용 (규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 (조건부수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하여 학위의 수준이 일치 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학교(대학)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 할 수 있음 * 대학의 학사학위과정과 전문대학의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은 학교 종류는 상이하나, 수여하는 학위 수준이 일치 - 다만 일반대학·전문대학 간 경계가 무너져 전문대학의 정체성 혼란 및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약 조건 만족시 전문대학·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허용 <준수 조건> ▶ 공동 교육과정 맞춤형 전공심화과정 설치·운영 ① 공동 교육과정에 맞게 설계된 전공심화과정을 신규인가 후 운영 (기존의 전공심화과정을 운영 중인 대학도 별도 신규인가 후 운영) ② 전공심화과정 설치·운영 조건(모집정원, 교사·교원확보율 등)은 현재와 동일 ③ 대학(이론)-전문대학(실무) 등 역할 구조 명확화를 통해 고숙련 전문직업인 양성을 전담하는 능동적인 파트너로서 전문대학 역할 강화 ※ 전문대학이 일반대학에 증속되는 모델 또는 단순 실습처를 제공하는 수준의 역할 방지 ⇨ 전공심화과정 학제(1년제, 2년제)를 고려한 공동 교육과정 설계 <table border="1" style="font-size: 0.8em;"> <caption>전공심화 2년 과정</caption> <thead> <tr> <th>일반대학</th><th>전문대학</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1학년</td><td>전문학사</td><td>1학년</td></tr> <tr> <td>2학년</td><td>사</td><td>2학년</td></tr> <tr style="border: 2px solid red;"> <td>3학년</td><td>전공심화</td><td>1학년</td></tr> <tr style="border: 2px solid red;"> <td>4학년</td><td>전공심화</td><td>2학년</td></tr> </tbody> </table> <table border="1" style="font-size: 0.8em;"> <caption>전공심화 1년 과정</caption> <thead> <tr> <th>일반대학</th><th>전문대학</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1학년</td><td>전문학사</td><td>1학년</td></tr> <tr> <td>2학년</td><td>전문학사</td><td>2학년</td></tr> <tr> <td>3학년</td><td>전문학사</td><td>3학년</td></tr> <tr style="border: 2px solid red;"> <td>4학년</td><td>전공심화</td><td>1학년</td></tr> </tbody> </table>			일반대학	전문대학	비고	1학년	전문학사	1학년	2학년	사	2학년	3학년	전공심화	1학년	4학년	전공심화	2학년	일반대학	전문대학	비고	1학년	전문학사	1학년	2학년	전문학사	2학년	3학년	전문학사	3학년	4학년
일반대학	전문대학	비고																												
1학년	전문학사	1학년																												
2학년	사	2학년																												
3학년	전공심화	1학년																												
4학년	전공심화	2학년																												
일반대학	전문대학	비고																												
1학년	전문학사	1학년																												
2학년	전문학사	2학년																												
3학년	전문학사	3학년																												
4학년	전공심화	1학년																												

규제특례 내용	적용대상 (고등교육기관)	적용기간
㉥ 교지·교사 임차 제한(임차권 설정 필요) 규제 완화 (규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9조 제1항 2호 가목, 나목 (조건부수용) 순천향대의 'AI의료융합 클러스터 구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육 및 연구활동의 안정성 담보(5년 이상 안정적 사용 보장)를 전제*로 지자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시설(휴먼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센터)에 대해 '지상권, 전세권 또는 등기되는 임차권 5년 이상 유지' 요건의 예외 적용 특례 부여 * i) 운영 위수탁 계약 ii) 공공기관-대학 간 운영 협약서 iii) 법적 책임과 운영 기간이 명시된 공적 협약 체계 iv) 5년 이상 안정적 사용이 보장되는 공공 위탁 운영 계약 ※ 특례운영시 고려사항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교지는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확보해, 교사는 건축관계법령에 적합해야 하며, 교수·학습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의 내부환경은 「학교보건법」제4조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 위생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해야 함	순천향대학교	'25.04.21. ~ '29.04.20.